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5월 2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, 박수진 사무관(5863), 유경희 주무관(5868)
덤핑조사팀 방순자 팀장, 조희정 사무관(5872)
불공정무역조사팀 정석진 팀장, 위민이 사무관(5883)

무역위원회, 『말레이시아산 합판』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내려

- 『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』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과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도 인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'14. 5. 22. (목), 제328차 회의를 개최하여, 『말레이시아산 합판』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함.

○ 또한, (주)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(주)가 신청한 『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(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, "POY")』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,

○ 한-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음.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1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에 대한 최종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선창산업(주) 등 3개사(이하 "요청인")가 요청한 『말레이시아산 합판*』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,

* 용도 :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, 마루판 등의 원·부자재로 사용

○ 앞으로 3년간 업체별*로 3.08~38.10%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였음.

*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신양, 포레스컴, 신양빈툴루, 제드티 8.06%, 수부르 티아사 3.17%, 자야 티아사 3.08%, 화센 3.24%, 시노라 38.10%, 그 밖의 공급자 8.76%임

□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*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, 말레이시아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, '13.7.31일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을 요청했고,

* 원심조치 : '11. 2. 1. ~ '14. 1. 31. (3년) / 5.12. ~ 38.10% 덤핑방지관세 부과

○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생산자,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,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되었음.

* 국내 현지실사('14.2~3월초), 공청회('14. 4. 24.)

□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으로, 수입산 합판의 덤핑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* 합판의 국내시장규모('13년)는 약 8,000억원 수준으로, 국내생산품이 25.0%, 말레이시아산 물품이 12.3%, 기타국산 물품이 62.7%를 차지함.

□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됨.

2 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(주)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(주)(이하 '신청인')이 『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(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, "POY")*』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신청에 대해,

* 용도 : 연신가공사(DTY), ITY, 기타 혼섬사와 같은 가공사의 모사(母絲)로 사용

○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,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함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12. 79 ~ 33.71%이며, 신청인은 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으로 인해,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

* POY의 국내시장규모('13년)는 약 2,696억원 수준으로, 국내생산품이 63.8%, 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물품이 35.1%, 기타국산 물품이 1.1%를 차지함

□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,'14. 8월경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임.

3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

□ 무역위원회는 한-ASEAN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면제티셔츠 생산 A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함.

○ A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A기업의 생산품을 ASEAN산 면제티셔츠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.

* ASEAN산 면제티셔츠 수입액(천불) : ('12상) 53,224 → ('13상) 67,812, 27.4 % 증가

□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,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

<붙임 1> 말레이시아산 합판 최종 판정 개요 1부
<붙임 2> 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개요 1부
<붙임 3>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유경희 주무관(☎ 044-203-58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붙임 1 말레이시아산 합판 최종 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 :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성창기업(주)

○ 재심사대상국 : 말레이시아

○ 재심사대상물품 : 합판(Plywood)

- 조사범위 :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, 두께 6mm 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

- 관세분류 : HSK 4412.31.4000, 4412.31.5000, 4412.31.6000, 4412.31.7000, 4412.32.4000, 4412.32.5000, 4412.32.6000, 4412.32.7000

- 용도 :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, 마루판 등의 원·부자재 등

□ 국내 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성창기업(주), 신광산업(주), 동일산업(주) 등 5개사

○ 수입자 : 미산우드(주), (주)태신, 동창종합건재(주) 등

○ 수요자 : 건축업체, 가구업체, 마루판제조업체 등

○ 국내시장규모('13년) : 약 8,000억원 (1,409,103㎥)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25.0%), 재심사대상물품(12.3%), 기타국물품(62.7%)

□ 그 동안의 조사 경과

○ '13.7.31 : 재심사 요청서 접수(기획재정부)

○ '13.8.27 : 조사 개시 결정(기획재정부 공고 : '13.9.26)

○ '14.2~3월 : 국내 현지실사

○ '14.4.24 : 공청회

○ '14.5.22 : 최종판정

붙임 2 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

○ 피신청인 : 말레이시아(Recron Malaysia Sdn. Bhd.), 태국(Indorama Polyester Industries Public Co., Ltd., Thai Polyester Co., Ltd.),인도(Reliance Industries Limited)

○ 조사대상물품 :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(POY,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)

- 조사범위 : 테레프탈산(TPA)과 에틸렌글리콜(EG)을 중합(重合)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

- 관세분류(HSK) : 5402.46.9000(기타)

- 용도 : 주로 연신가공사(DTY), ITY, 기타 혼섬사와 같은 가공사의 모사(母絲)로 사용되며, 추가 가공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져 의류·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 등 8개사

○ 수입자 : 칠성섬유(주), 제원화섬(주), 동호합섬(주), (주)한승, (주)동준인터내셔날, (주)범일섬유, 솔상인터내셔날(주) 등

○ 수요자 : DTY(Draw Textured Yarn), ITY(Interlaced Textured Yarn) 등 원사업체

○ 국내시장규모('13년) : 약 2,696억원(133,588톤)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63.8%), 조사대상물품(35.1%), 기타국물품(1.1%)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붙임 3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**(요건)** 신청기업의 피해가 FTA로 인한 수입이 주된 원인일 것

①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
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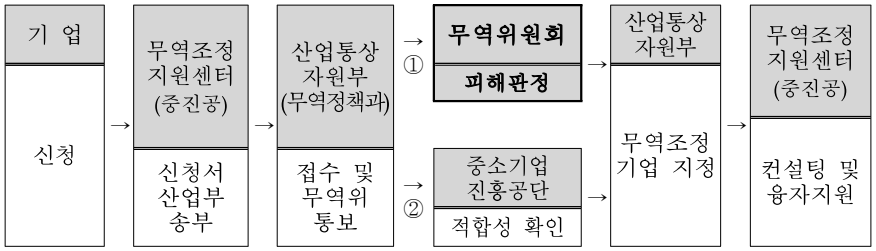
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[illegible]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운영현황)** '13년까지 신청건수는 52건이며, 39건에 대해 피해판정

<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(단위 : 개사)>

구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누계
신청	3	3	2	-	13	31	52
(조사중)						(1)	(1)
피해 판정	2	3	2	-	8	24	39
피해 없음(철회)	1				5(3)	6(2)	12

○ **(품목별)** 총 39건의 피해 판정 중 돈육가공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핸드백 및 지갑 2건, 골프웨어 2건 등 다양한 품목을 판정

* 판정품목(건수): 돈육가공품(16), 핸드백 및 지갑(2), 골프웨어(2), 머루주(1), 시계(1), 염장고등어(1), 복분자주(1), 도료경화제(1), 티셔츠(1), 탈모방지샴푸(1), 초콜릿(1), 방적기계부품(1), 와인(1), 등산화(1), 스포츠용신발(1), 에틸렌글리콜(1), 페인트(1), 염모제(1), 드레스화(1), 기초용화장품(1), 스프링(1), 여성의류(1)

- 가장 피해판정이 많은 돈육가공기업의 경우 피해기간이 '12년 상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

- '13년 하반기에는 돈육가공기업보다는 드레스화, 골프웨어 등 다양한 품목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

○ **(협정별)** 신청건에 대한 관련 FTA는 한-EU FTA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한-ASEAN FTA가 12건으로 많은 비중 차지

* 한-EU(30), 한-ASEAN(12), 한-칠레(4), 한-EFTA(4), 한-미(1), 한-싱가폴(1)

□ **(지원실적)** 30개 기업에 총 96.55억원 지원(융자 94.49억, 상담 2.06억)

* 융자지원(억원): ('08)5.5→('09)6.0→('10)22.37→('11)0→('12)25.12→('13)35.5
상담지원(백만원): ('08)32→('09)16→('10)16→('11)0→('12)78→('13)64

□ **(지원내용)** 컨설팅 자금 및 융자 지원

*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(기업 당 40백만원 한도)

○ 융자 :

- 대출 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15%p차감(기준금리)

* '14년 2/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.13%
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, 운전자금 5년 이내
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45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